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554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0. 21.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가단188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9,080,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80,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이 2010. 12. 29. 주식회사 D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 연 44%, 변제기일 2015. 12.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주식회사 D이 2011. 12. 1.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가 2012. 4.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23.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10. 14. ‘C은 원고에게 4,748,288원과 그 중 2,187,136원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

C과 피고의 모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5.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와 C이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8.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 의정부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C이 2003. 9. 19. 보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보유 부동산이 없었던 사실, ②C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13,992,89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③의정부시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C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은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13,992,890원의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만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C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C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의 지분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나) 그런데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2)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후인 2019. 6. 17.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3. 3. 27.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48,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후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②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1. 3. 8. 하한가를 기준으로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추인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8,800,000원을 공제한 82,200,000원 중 C의 상속분 상당액 41,100,000원($= 82,200,000\text{원} \times 1/2$)을 상회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0. 11. 기준으로 9,080,974원[$= 4,748,288\text{원} + 2,187,136\text{원} \times 0.39 \times (5\text{년} + 28\text{일}/365\text{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이다.

라) 위 피보전채권액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C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인 9,080,9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9,080,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

별지

부동산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1039㎡
2. 경기도 의정부시		대 75㎡
3. 경기도 의정부시		대 7175㎡
4. 경기도 의정부시		대 180㎡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469분의 34.45

끝.

